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0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미화 · 윤준병 · 이춘석
양문석 · 이연희 · 이정문
박홍배 · 김남희 · 박용갑
이용선 · 이수진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에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

제3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신설></u>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간병</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